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부산)디에이치저축은행

2. 조치일 : 2026. 2. 11.

3. 조치내용

제재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운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산업별, 고객분류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부산)디에이치저축은행(이하 '회사')은 검사기준일 현재 총여신 중 PF대출·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37.1%를 차지하고, 중도금대출을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으며, 가계대출 중 중도금대출 비중이 높은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편중 취급으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업환경 변동 시 관련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동산 부문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고객그룹에 대한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본PF 사업장 사후관리카드 작성 미흡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제7조, 제21조, [별표1]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진행상황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6조, [별표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진행상황 등을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사업장별 전담직원을 지정하지 않았고, 월 1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전성 변화 등 사업장 진행상황을 사후관리카드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업장별 사후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장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카드에 충실히 기재하며, 이를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 브릿지성 대출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준일 현재 회사는 ○개의 사업장에 PF성 브릿지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그중 ○개의 사업장이 3회 이상 만기가 연장된 사업장인바,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성 평가가 하향되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브릿지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